(붙임 1)	비조	스치의견서	ने (□धो	조치 🏻	조치	<b>☑</b> フ]	타)	
담당자	담당부서 은	행감독국	담당자	팀장 김투	쿠곤	연락처	02)3145-804	<b>4</b> 0
요청대상 행위	□「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」개정안*시행(시행일 미정) 이전에 대출신청 및 상담이 접수되어 대출절차가 진행중인 건에 대해서 *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서울시:(현행) 3,400만원 → (개정) 3,700만원							
	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: (현행) 2,700만원 → (개정) 3,400만원 등 ○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<별표18>의 LTV 산정시 적용할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은 '대출신청 및 상담시점'의 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, 아니면 '대출실행시점'에 적용될 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							
제재대상 해당여부 에 대한 판단	□ 차주가「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」개정안 시행일 전일까지 대출신청 또는 상담을 한 경우에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LTV산정시 대출신청 또는 상담시점의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							
	○ 다만, 은행 되는 경우○	전산시스템을 세 한합니다.	통해 '대출	·신청 또는	상딤	′ 날짜기	- 명확히 확	인
	○ 이 경우 대출실행시점에 최우선소액변제 임차보증금이 상향되어 LTV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						밀	
판단이유	□ 본 건에 한 <sup>8</sup> 임차보증금·	해, 다음의 사 을 적용가능합		<b>)</b> 여 대출신	청시	점의 최·	우선변제 소	액
	① 「주택임대 은행창구니	차보호법시행 · 고객들이 ㅇ	- <del>-</del>					로
	<ul><li>② 이미 대출</li><li>축소로 주택</li></ul>	절차가 상당 택매매 등에	_		•			도
	③ 대출신청 및 할 필요가		상담을 완효	문한 차주의	} 은 <sup>†</sup>	행간 신호	리관계를 보	호
		임대차보호법/ :과 관련하여 해 동일한 니	금융감독원	· 인은 은행연	합회	의 비조	치의견서 요	
2016년 8월 28일 금융감독원 원장 (인)								

- ※ **비조치의견서의 효력**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11조제1항·제2항 참조)
 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 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 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  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  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  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